

폴리에스터事件의 敎訓

—6年法廷劇이 和解로 落着—

1957年 英國의 帝國化學工業社(ICI)는 폴리에스터纖維의 製法에 관한 特許技術을 日本의 帝人과 現在의 東洋兩社에 實施許諾하였다.

이 特許는 英國의 凱利柯 프린더즈가 保有하고 帝國化學工業社는 凱利柯로부터 日本에서의 實施權限을 허락받았다. 그 特許의 發明名稱은 高重合物質의 製法(1953. 12. 18登錄)과 高重合物로부터 人造纖維의 製法(1955. 5. 14登錄)의 두가지였다.

帝國化學工業社와 東洋兩社는 帝國化學工業社와의 技術支援契約下에 58년부터 그 실시권과 諾우하우에 의거하여 폴리에스터섬유의 生産·販賣를 開始하는 한편 商標는 메트론이라고 共用하였다.

한편 同種纖維企業인 東洋紡織이 1961年 美國의 公司인 公司, 현재의 유니티카는 스위스의 인벤타, 현재의 쿠라제는 美켄스트런드社로부터 各各 폴리에스터纖維技術을 도입하기로 決定하고 1962년에는 技術支援契約에 대한 政府의 認可를 받기로하되 商標는 에스터로하여 3社가 共用하기로 하였다.

이 事實을 探知한 凱利柯는 直刻 權利範圍 確認審判訴를 提起하고 前記 3社의 技術이 自社の 特許範圍임을 確認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提訴는 生産前이기 때문에 特許侵害아닌 權利範圍確認訴에 이른 것이다. 이 때의 凱利柯의 攻擊은 기술지원계약에 대한 政府認可直前에 開始한 것이다.

또한 凱利柯는 民訴管轄上 被訴者의 本社 住所인 大阪(東洋紡), 京都(유니티카), 岡山(쿠라제) 地法에 各各 提訴하였고 訴 內容인즉 첫째의 高重合物質의 製法에 의한 技術은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테레프탈酸을 反應시켜 그 反應生成物을 加熱하여 高重合된狀態의 에스터로 만든다는 要旨였고 둘째 發明특허인 高重合物

로부터 人造纖維의 製法도 첫째 發明특허에서 生成된 에스터에서 入造섬유를 제조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東洋紡織 등 後發 3社는 그들이 도입한 技術은 重合方法의 出發物로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테레프탈酸을 含有하기는 했으나 第3原料를 加하여 染色性, 強度등이 보다 優秀한 生成物을 만드는 것이며 그 第3原料란 東洋紡織의 技術은 이소프탈酸, 유니티카는 파라오키시安息香酸, 쿠라제는 메트키시폴리에틸렌글리콜들이라고 抗辯하였다.

그러나 쿠라제를 상대로한 岡山地法에서는 3年半後에 和解가 成立되었고 條件인즉 쿠라제에 帝國化學工業社와 東洋兩社에 再實施許諾料를 35,000萬圓과 그 후부터 1%, 帝國化學工業社에 대하여는 3,000萬圓과 2%를 支拂기로 한 것이다.

한편 그로부터 2年後에 東洋紡織事件을 다루던 大阪地法에서는 公司에서 도입한 技術은 凱利柯의 特許權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한편 그 半年後인 유니티카를 맡은 京都地法에서는 凱利柯의 勝訴를 宣言하였다.

이같은 大阪地法事件判示에 따라 凱利柯는 上級法院인 大阪高法에 抗訴하였고 帝國化學工業社와 東洋兩社도 東洋紡織과 유니티카를 상대로 10億圓의 損害賠償請求를 入소하는 등 複雜해졌다.

이때의 凱利柯特許權은 存續期間이 經過되었고 損害賠償請求로 바꾼 理由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大阪高法은 1969年 7月 和解를 勸誘하여 다음해의 1月에는 和解를 成立시켰고 條件은 東洋紡織은 凱利柯에게 12,000萬圓, 유니티카는 8,000萬圓을, 帝國化學工業社에게는 東洋紡織이 22,000萬圓, 유니티카는 18,000萬圓의 損害賠償金을 지불하기로 確定함으로써 8年間의 法廷劇은 매듭을 지었다.